

소고기 수입관련 법규

□ 소고기(축산물) 수입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인니 수입에 대한 2014년 농업부 장관령 제 139호 (Peraturan Menteri Pertanian nomor 139/Permentan/PD.410/12/2014 tentang pemasukan karkas, daging, dan/atau olahannya ke dalam wilayah negara republik Indonesia)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호텔, 식당, 케이터링, 산업용 그리고 특수목적에 한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하며,

○ 특수목적이란 ①선물용, 사회적, 종교적, 재난 대비 목적, ②대사관 등의 정부기관의 내부소비 목적 ③연구목적의 조사 개발용도, ④전시목적의 샘플 (200kg)임. (Regulation 139 of 2014 Art.32)

○ 위의 언급된 목적 이외의 수입은 시장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조달청만 (Bulog - Badan urusan Logistik) 수입, 유통 가능함. (Art. 23)

○ 소고기 수입을 위해서는 하기의 5가지 서류가 필요함.

1. 수입자등록
2. 관세청등록번호
3. 축산물수입자 등록
4. 농림축산부(Kesmavet) 장관의 추천서
5. 무역부장관의 허가

○ 축산물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 a. 수입 가능한 고기의 종류는 193호 2014년 법령 별첨 1호에 언급되어있는 종류에 한함.
- b. 원산지 규정(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국가의 검역서,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 c. 포장, 라벨링 그리고 수송 관련 : 포장재료는 인체건강에 무해한 재료와 방법으로, 라벨링은 인도네시아어로, 수송수단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 구제역 발생 여부에 따른 수입 허가 관련

- 관련 법령 : 1. 2014년 가축 및 동물위생에 관한 법령 제 41호
(UU No. 41 Tahun 2014)
2. 2014년 농업부 장관령 제 139호
(Permentan No. 139 Tahun 2014)
- 인도네시아는 구제역 발생국가 제품을 수입허가 하지 않으며,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은 Free FMD(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국가 또는 지역(Zone)과, WOAHA(세계동물보건기구) /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FMD 안전국가로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Zone)에 한함.
- 관련 법령 2014년 41호 36조 E에 의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zone) 내에서 수입을 하고, 요건은 동 법령 59조 2항에 따라 법령 2014년 제 139호 에 언급되어 있음.
- 법령 2014년 139호에 의거,
 - Article 7, Article 8 육류와 유제품은 Free FMD 국가 또는 지역 (Zone) 으로부터 수입함
 - Article 12 WOAHA / OIE에서 FMD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수입함
 - Article 13 인도네시아는 구제역발생국가의 제품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쇠고기 가격 상승, 쇠고기 자급자족 목표 달성 실패, 축산물 수입에 있어 호주 의존 심화 등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일본으로부터 냉동육을 수입하기 시작했음. 한편 일본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하였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을 고려 중이며, 가격과 위생을 기준으로 수입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